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

1 기본	현 황						
□ 사업개요					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				
사업위치							
총사업비	총 17,000,000천원	(국비) (시 17,	비] (보조율) ,000,000천원 0 %	(구비)			
사업내용			E사업본부의 상수! 1 시민편의 제공 기	도 과징업무와 통합 세고			
사업형태	☑직접수행 □자기	시단체 보조 □민긴	나이전 □출연출자	□민간위탁 □기타			
사업시행주체	물재생계획과						
□ 사업 성격 및	및 사전절차 대성	상 여부					
신규 계속 투자	-심사 학술용역 기약	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	정보화심사 공유재산	안전예산 출자·출연			
경상 투자							
\square							
□ 사업 담당자							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			
물순환안전국	물재생계획과	하상문 2133-3780	송요상 2133-3815	김미영 2133-3817			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년 예산액	2015예산액 (A)	2016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17,468,000	(x-) 17,000,000	(x-) 17,000,000	(_X -)	(X-)
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	(x-) 17,468,000	(x-) 17,000,000	(x-) 17,000,000	(X-)	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		
공기업특별회계경상 전출금	○ 하수도사용료 징수예상액*2016년 수수료율(3%) 563,732,874,000원*3%	=	17,000,00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○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를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와 통합 시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편의 제공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6조(위탁징수)
 - ▷ 하수도사용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 관련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징수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시장방침 제660호('07.11.30), 부시장방침 제7760호('12.6.27)에 따라 징수절차 및 비용결정

□ 사업내용

○ 지급방법 : 매월 정산지급

○ 산출방법 :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의 3%

○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
○ 사업내용 :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과징업무와 통합 시행하여

○ 총사업비 : 17,000백만원

□ 추진경위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○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

□ 사업추진절차

- 집행절차
 - 매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확인통보(시→상수도) ⇒ 위탁징수 수수료 청구 (상수도→시)⇒ 위탁징수 수수료 납부(시)
- 계약체결

□ 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7,000,000	
징수액 정산확인 지급	2016.01~2016.12	17,000,000	매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정산 지출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2년도	○ 위탁징수 수수료 : 하수도사용료 30% 인상에 따라 수수료율 4.5%로 하향 조정
2013년도	○ 위탁징수 수수료 : 하수도사용료 20% 인상에 따라 수수료율 3.5%로 하향 조정
2014년도	○ 위탁징수 수수료 : 하수도사용료 15% 인상에 따라 수수료율 3.0%로 하향 조정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상 ? 하수도요금 통합 징수관리 및 검침 일원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
- 상 ? 하수도요금 통합관리로 관리비용 절감

5 회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	
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	------	------	--

2012	(x-) 14,400,000	(x-)	(x-)	(x-) 14,400,000	(x-) 14,400,000	(x-)	(x-) 0
2013	(x-) 20,000,000	(x-)	(x-)	(x-) 20,000,000	(x-) 18,993,572	(x-)	(x-) 1,006,428
2014	(x-) 17,468,000	(x-)	(x-)	(x-) 17,468,000	(x-) 17,174,294	(x-)	(x-) 293,706